

경기도 공고 제2026-6088호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(영업정지)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23일

경기도지사

상 호 (대표자)	소 재 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	처분사유	처분근거
(주)굿섬종합건설 (이성연)	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11번길 40-20, 503호 (별내동)	건축공사업 (10-4295)	영업정지 4개월 (‘26. 09. 23. ~ ‘27. 01. 22.)	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(기술능력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제3호